장로교회 정치 형태

에든버러 총회, 1645년 2월 10일 오후. 제16차 회기.

교회 정치와 사역자 안수에 관한 제안들을 승인하는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의 법령.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징의 책들과 총회들의 법령들과 국가 언약에 따라, 이 왕국에 교회 정치 형태가 확립되고 보존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의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의하여 이제 더욱 긴밀하고 굳게 연합된 이 왕국들 사이에 교회 정치의 획일성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고 염려하며; 또한 이전 시대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전염의 가까움으로 인하여, 잉글랜드 교회의 부패한 정치 형태로부터 이 교회에 여러 가지 해악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하며: 마찬가지로 세 왕국 모두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교회 정치의 획일성으로 이끌 귀한 기회가 이전 시대보다 현 시대의 행복이며; 이는 또한 하나님의 복으로, 현재의 압박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원래 비롯된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근거가 튼튼한 평화를 준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좋은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그리고 이제 총회는,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신학자 총회의 길고 학식 있는 토론의 결과로서, 또한 그곳에 머무르는 이 교회의 위원들과의 획일성에 관한 협의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가져온, 교회의 직원들과 회의들과 정치에 관한, 그리고 사역자 안수에 관한 제안들(이에 첨부됨)을 세 번 낭독하고 부지런히 심사하였으므로; 성숙한 숙고 끝에,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어떤 이의라도 가진 모든 이에게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알리라고 적시에 요청하고 경고한 후에; 교회 정치와 안수에 관한 앞서 언급한 제안들을 합의하고 승인하며; 또한 이로써, 에든버러에서 모일 이 총회의 위원들에게, 앞서 언급한 제안들이 잉글랜드 의회의 명예로운 양원의 조례에 의하여 아무런 본질적 변경 없이 비준되는 즉시, 이 총회의 이름으로, 앞서 언급한 세부 사항들에 있어서 양 왕국의 교회들 사이의 획일성에 합의하고 그것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 비준은 런던에 머무르는 이 교회의 위원들에 의하여 적시에 통지되고 알려질 것이다. 다만 언제나 다음과 같이 규정하노니: 이 법령은, 박사 곧 교사도 목사와 마찬가지로 성례를 집행할 권세를 가진다는 것을 제시하는 조항에 대한, 또한 사역자들의 청빙에 있어서 노회들과 교인들의 구별된 권리와 이해관계에 대한 향후의 논의와 심사를 결코 해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더 많은 빛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대로, 이 점들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은 자유로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깨에는 정사가 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일컬어지며;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에 끝이 없으므로,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 위에 앉으사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고 세우실 이시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셨고, 아버지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자기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모든 하늘 위에 오르사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자기 교회를 위하여 은사를 받으사 자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필요한 사역자들을 주신 이가 바로 그이시다.

교회에 관하여

신약에는 하나의 보편적 가시적 교회가 제시되어 있다.

신약의 사역과 신탁과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편적 가시적 교회에 주신 것이니, 이는 이 세상에서 그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모으고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보편적 교회의 지체들인 개별적 가시적 교회들도 신약에 제시되어 있다.

초대 시대의 개별 교회들은 가시적 성도들로 구성되었으니, 곧 성년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을,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가르친 신앙과 삶의 규칙에 따라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었다.

교회의 직원들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정하신 직원들은, 어떤 이들은 사도, 복음전도자, 선지자와 같이 특별한 직원으로서 이미 그쳤다.

다른 이들은 목사, 교사와 그 외 교회의 치리자들, 그리고 집사와 같이 통상적이며 영구한 직원이다.

목사

목사는 복음 시대를 예언하는 교회의 통상적이며 영구한 직원이다.

첫째로, 그의 직무에 속하는 것은,

양 떼를 위하여, 그리고 양 떼와 더불어, 백성의 입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 *사도행전 6:2,3,4*、*사도행전 20:36*, 여기서 설교와 기도는 같은 직무의 여러 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 장로(즉 목사)의 직무는 병자를 위하여, 심지어 사적으로도 기도하는 것이니, 여기에 특별히 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물며 그가 자기 직무의 공적 수행에 있어 이를 그 직무의 한 부분으로 행하여야 함은 더욱 그러하다.

성경을 공적으로 낭독하는 것; 그 증거로,

1. 유대 교회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말씀의 공적 낭독이 맡겨졌다는 것.

2. 복음의 사역자들이 말씀과 다른 규례들을 나누어 주는 데 있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 아래서 가졌던 것만큼이나 넓은 직무와 위임을 가지고 있음이, *이사야 66:21*, *마태복음 23:34*에서 나

타나니, 여기서 우리 구주께서는 자기가 보내실 신약의 직원들을, 구약의 교사들과 동일한 이름으로 칭하신다.

이러한 명제들은, (그것이 도덕적 본성의 의무이므로) 정당한 결론에 의하여, 성경의 공적 낭독이 목사의 직무에 속함을 증명한다.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양 떼를 먹이는 것이니, 그에 따라 가르치고, 확신시키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여야 한다.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신탁의 첫 원리들, 곧 그리스도의 교리를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며, 설교의 한 부분이다.

다른 신적 신비들을 나누어 주는 것.

성례를 집행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축복하는 것, *민수기 6:23-26. 요한계시록 1:4,5*와 비교하라(여기서 동일한 복과 그것이 나오는 인물들이 언급된다), *이사야 66:21*, 여기서 복음 아래서도 계속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는 이름 아래, 복음의 목사들이 이해되며, 그러므로 그들이 직무상 백성을 축복하여야 한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또한 목자로서 양 떼에 대한 치리의 권세도 가진다.

교사 혹은 박사

성경은 목사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이름과 칭호도 부각시킨다.

그도 목사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사역자이며, 성례를 집행할 권세를 가진다.

주께서 말씀의 사역에 있어 서로 다른 은사와 그 은사에 따른 다양한 실행을 주셨으니; 비록 이 서로 다른 은사들이 한 사역자 안에 모여 그에 의하여 실행될 수도 있으나, 한 회중에 여러 사역자가 있을 때는, 각자가 뛰어난 서로 다른 은사에 따라 다양한 직무에 배정될 수 있다. 그리고 성경 해석과 건전한 교리의 가르침과 반대자들을 확신시키는 데 있어 적용보다 더 뛰어난 이는 교사 혹은 박사라 불릴 수 있으며(그 말의 뜻에 대해 인용된 본문들이 이 명제를 증명한다); 그러나 한 개별 회중에 사역자가 단 한 명뿐일 때는, 그는 자기 능력이 닿는 대로 사역의 모든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사 혹은 박사는 학교와 대학에서 지극히 유용하니; 옛적 선지자들의 학교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과 다른 이들이 박사로서 가르쳤던 것과 같다.

교회의 다른 치리자들

유대 교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더불어 교회 치리에 함께하는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치리와 치리자들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자들 외에, 치리의 은사와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것을 수행할 위임을 가진 이들을 두셨으니, 이들은 교회의 치리에 있어 사역자들과 함께하여야 한다.

개혁 교회들은 이 직원들을 일반적으로 장로라 부른다.

집사

성경은 집사를 교회 안의 구별된 직원으로 지정한다.

그 직분은 영구하다. 이 직분에 속하는 것은 말씀을 설교하거나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나누어 주는 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개별 회중에 관하여

공적 예배를 위하여 통상적인 회합에 모이는 일정한 그리스도인의 무리, 곧 고정된 회중이 있는 것은 합법적이고 합당하다.

신자들이 한 곳에 편리하게 모일 수 없을 만큼 불어날 때에는, 그들에게 속한 규례를 더 잘 시행하고 상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별되고 고정된 여러 회중으로 나뉘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당하다.

그리스도인들을 구별된 회중으로 나누는 통상적이며 덕을 세우는 데 가장 합당한 방식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계에 따른 것이다.

첫째로, 함께 거주하는 이들은 서로에 대하여 온갖 도덕적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것을 이행할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지기 때문이니, 이 도덕적 유대는 영구한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둘째로, 성도의 교제는 규례의 가장 합당한 사용과 도덕적 의무의 이행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허락하는 방식으로 정돈되어야 한다.

셋째로, 목사와 백성은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서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

이 무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따로 구별되어야 한다.

개별 회중의 직원들에 관하여

한 회중의 직원들로는, 말씀과 교리에 힘쓰는 일과 치리를 위하여 적어도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치리에 함께할 다른 이들도 있어야 한다.

또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다른 이들도 있어야 한다.

각각의 수는 그 회중의 형편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 직원들은 그 회중의 일을 잘 정돈하기 위하여, 각자 자기 직무에 따라 정해진 편리한 때에 모여야 한다.

이러한 모임에서, 말씀과 교리에 힘쓰는 직무를 맡은 이가 그 진행을 주재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

개별 회중의 규례에 관하여

한 회중 안에서의 규례들은 다음과 같다:

기도, 감사, 시편 찬송, (비록 낭독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이 없더라도) 말씀의 낭독, 말씀의 강해와 적용, 교리문답, 성례의 집행,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 그리고 축복으로 백성을 보내는 것.

교회의 치리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치리와 교회의 치리자들을 제정하셨으니: 이 목적을 위하여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직접 열쇠들을 받았고, 그것을 온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모든 경우에 사용하고 행사하였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자기 교회 안의 어떤 이들에게 치리의 은사와,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것을 수행할 위임을 부여하셨다.

교회가 회중별, 노회별, 총회별 여러 종류의 회의에 의하여 치리되는 것은 합법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다.

이 모든 회의들의 공통된 권세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여러 회의가 각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서 자기 앞에 제기된 교회의 사안과 관련된 자를 소환하여 부를 권한을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다.

그들은 자기 앞에 정당한 절차로 제기된 사안과 분쟁을 듣고 결정할 권세를 가진다.

앞서 언급한 모든 회의가 교회의 견책을 시행할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다.

회중 회의에 관하여

개별 회중의 치리 직원들은 정당한 경우로 판단되는 대로, 권위를 가지고 회중의 어떤 지체든지 자기 앞에 소환할 권세를 가진다.

회중의 여러 지체의 지식과 영적 상태를 살피는 것.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

이 세 가지는 *히브리서 13:17*; *데살로니가전서 5:12,13*; *에스겔 34:4*에 의하여 증명된다.

아직 교회에서 출교되지 않은 사람을 주의 상으로부터 권위 있게 정직시키는 것은 성경에 부합한다:

첫째로, 그 규례 자체가 모독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는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로부터 물러서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셋째로, 합당치 않게 나아오는 자에게나, 온 교회에나 그 죄와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약 아래서도 부정한 자들을 거룩한 것들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권세와 권위가 있었다.

이와 같은 권세와 권위가, 유비에 의하여, 신약 아래서도 계속된다.

개별 회중의 치리 직원들은 아직 교회에서 출교되지 않은 사람을 주의 상으로부터 권위 있게 정직시킬 권세를 가진다:

첫째로, 성례를 받기에 합당한 자를 판단하고 받아들일 권위를 가진 이들은, 합당치 않다고 여겨지는 자를 물리칠 권위도 가지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는 그 회중에 속한 통상적 실행의 교회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회중들이 나뉘고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내적 연약함과 상호 의존, 그리고 외부의 원수들과 관련하여, 서로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노회에 관하여

성경은 한 교회 안에 하나의 노회(장로회)를 지정한다.

노회는 말씀의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교회의 치리자가 되도록 인정되고 보증되어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의 치리에 참여하는 다른 공적 직원들로 구성된다.

성경은 여러 개별 회중이 하나의 노회 치리 아래 있을 수 있음을 지지한다.

이 명제는 다음의 예들로 증명된다:

I.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인데, 이는 하나 이상의 회중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 모든 회중은 하나의 노회 치리 아래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증명된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이상의 회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니:

1°, 박해로 인하여 그곳의 신자들이 흩어지기 전에도, 흩어진 후에도,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 신자들의 무리로 보아 그러하다.

2°,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사도들과 다른 설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곳에 한 회중밖에 없었다면, 각 사도는 극히 드물게만 설교하였을 것이니; 이는 *사도행전 6:2*과 부합하지 않는다.

3°, 사도행전 2장과 6장에 언급된 신자들 사이의 언어의 다양성은 그 교회에 하나 이상의 회중이 있었음을 논증한다.

둘째로, 이 모든 회중은 하나의 노회 치리 아래 있었으니, 이는:

1°, 그들이 하나의 교회였기 때문이다.

2°, 그 교회의 장로들이 언급되기 때문이다.

3°, 사도들이 그 교회에서 장로로서 장로들의 통상적인 행위를 행하였으니; 이는 그것이 흩어지기 전에 노회 치리 교회였음을 증명한다, 사도행전 6장.

4°, 예루살렘의 여러 회중이 하나의 교회였으므로, 그 교회의 장로들이 치리의 행위를 위하여 함께 모였다고 언급되니, 이는 이 여러 회중이 하나의 노회 치리 아래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 회중들이 직원이나 지체에 있어 고정되어 있었든 아니든, 그 명제의 진실성에 관한 한 모두 하나이다.

또한 예루살렘의 여러 회중과, 지금 교회의 통상적인 상태에서 발견되는 많은 회중들 사이에, 직원이나 지체의 요구되는 고정성에 관하여 실제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셋째로, 그러므로 성경은 많은 회중이 하나의 노회 치리 아래 있을 수 있음을 지지한다.

II. 둘째로, 에베소 교회의 예로써; 이는:

첫째로, 에베소 교회에 하나 이상의 회중이 있었다는 것은 *사도행전 20:31*에 나타나니, 여기서 바울이 삼 년 동안 에베소에서 설교하며 머물렀다고 언급되며; *사도행전 19:18,19,20*에서는 말씀의 특별한 효력이 언급되고; 같은 장 10절과 17절(*사도행전 19:10,17*)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별되며; *고린도전서 16:8,9*에서는 바울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문 것이 설명되고; 19절(*고린도전서 16:19*)에서는 당시 에베소에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한 개별 교회가 언급되니, 이는 *사도행전 18:19,24,26*에 나타난 것과 같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신자들의 무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 이상의 회중을 이루었음을 증명한다.

둘째로, 이 많은 회중 위에 하나의 양 떼처럼 많은 장로들이 있었음이 증명된다.

셋째로, 이 많은 회중이 하나의 교회였으며, 하나의 노회 치리 아래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총회(대회)에 관하여

성경은 노회와 회중 회의 외에도 교회의 치리를 위한 또 다른 종류의 회의를 지정하니, 우리는 이를 모두 총회(대회)라 부른다.

목사와 교사, 그리고 교회의 다른 치리자들은(합당하다고 여겨질 때 다른 적합한 인물들도) 정당한 소집을 받을 때 우리가 총회라 부르는 회의의 회원이 된다.

총회는 지역 대회, 전국 대회, 세계 대회와 같이 합법적으로 여러 종류가 될 수 있다.

교회의 치리를 위하여 회중 회의, 노회, 지역 대회, 전국 대회의 종속 관계가 있는 것은 합법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다.

사역자의 안수(임직)에 관하여

사역자의 안수라는 제목 아래에서는 그 교리와 그 권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안수의 교리에 관하여

어떤 사람도 정당한 부르심 없이 말씀의 사역자 직분을 스스로 떠맡아서는 안 된다.

안수는 교회 안에서 항상 계속되어야 한다.

안수는 어떤 사람을 교회의 어떤 공적 직분을 위하여 엄숙하게 구별하는 것이다.

모든 말씀의 사역자는 그것에 합당한 설교 장로들에 의하여, 안수와 기도로써, 금식과 더불어 임직되어야 한다.

사역자로 안수받을 이들이 어떤 개별 교회나 다른 사역 직임에 지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며 지극히 합당하다.

사역자로 안수받을 자는 사도의 규칙에 따라, 삶에 있어서나 사역의 능력에 있어서나 합당하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는 그를 안수할 이들에 의하여 심사받고 승인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그 회중의 사람들이 그에 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그 개별 회중을 위한 사역자로 안수받아서는 안 된다.

안수의 권세에 관하여

안수는 노회의 행위이다.

안수의 권세와 안수의 모든 사역은 온 노회 안에 있으니, 노회가 하나 이상의 회중 위에 있을 때, 그 회중들이 직원이나 지체에 있어 고정되었든 아니든, 안수의 문제에 관한 한 무관하다.

편리하게 결합할 수 있는 어떤 단일 회중이라도 안수의 모든 권세를 독점적으로 자처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필요하다:

1. 편리하게 결합할 수 있는 한 회중이 안수의 모든 권세를 독점적으로 자처한 예가 성경에는 없으며, 그러한 관행을 정당화할 만한 규칙도 없기 때문이다.

2. 여러 회중에 걸친 하나의 노회 안에서의 안수의 예가 성경에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회중이 있었던 것과 같으며: 이 여러 회중은 하나의 노회 아래 있었고, 이 노회가 안수하였다.

도시에서나 인근 마을에서나 질서 있게 연합한 설교 장로들은, 각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회중들을 위하여 안수의 임무를 맡은 이들이다.

사역자 안수의 교리적 부분에 관하여

1. 어떤 사람도 정당한 부르심 없이 말씀의 사역자 직분을 스스로 떠맡아서는 안 된다.

2. 안수는 교회 안에서 항상 계속되어야 한다.

3. 안수는 어떤 사람을 교회의 어떤 공적 직분을 위하여 엄숙하게 구별하는 것이다.

4. 모든 말씀의 사역자는 그것에 합당한 설교 장로들에 의하여, 안수와 기도로써, 금식과 더불어 임직되어야 한다.

5. 안수의 권세와 안수의 모든 사역은 온 노회 안에 있으니, 노회가 하나 이상의 회중 위에 있을 때, 그 회중들이 직원이나 지체에 있어 고정되었든 아니든, 안수의 문제에 관한 한 무관하다.

6. 사역자로 안수받을 이들이 어떤 개별 교회나 다른 사역 직임에 지정되는 것은 말씀에 부합하며 지극히 합당하다.

7. 사역자로 안수받을 자는 사도의 규칙에 따라, 삶에 있어서나 사역의 능력에 있어서나 합당하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8. 그는 그를 안수할 이들에 의하여 심사받고 승인받아야 한다.

9. 어떤 사람도, 그 회중의 사람들이 그에 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그 개별 회중을 위한 사역자로 안수받아서는 안 된다.

10. 도시에서나 인근 마을에서나 질서 있게 연합한 설교 장로들은, 각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회중들을 위하여 안수의 임무를 맡은 이들이다.

11. 특별한 경우에는, 정해진 질서가 마련될 때까지, 규칙에 최대한 가깝게 머물면서 특별한 일이 행해질 수 있다.

12. (우리가 겸손히 이해하는 바로는) 현재 사역자의 현재 공급을 위한 특별한 형태의 안수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가 지금 있다.

사역자 안수를 위한 지침서

어떤 사람도 정당하게 부르심받고 안수받기 전에는 복음의 사역자 직분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안수의 사역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모든 신중함과 지혜와 엄숙함과 장엄함을 다하여 이루어져야 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우리는 준수되어야 할 요건으로서 다음의 지침들을 겸손히 제시한다.

1. 안수받을 이는, 백성에 의하여 지명되었든 다른 방식으로 노회에 위탁되었든, 어느 곳을 위해서든 노회에 나아가야 하며, 세 왕국의 서약을 받았다는 증거와, 자기 학업에서의 근면함과 능력,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그곳에 머문 기간, 그리고 그의 나이가 스물넷이어야 한다는 것과, 특별히 그의 삶과 언행에 관한 증언을 가지고 와야 한다.

2. 노회에 의하여 심사받은 후, 그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그리고 그가 복음의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을 가졌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그의 학식과 충분함, 그리고 거룩한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증거, 특별히 그 자리로의 정당하고 직접적인 부르심에 관하여 그를 심사하여야 한다.

3. 이 모든 일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섬길 교회로 보내져 그곳에서 서로 다른 사흘에 설교하고 백성과 대화하게 하여, 백성이 자기 덕을 위하여 그의 은사를 시험하게 하고, 그의 삶과 언행을 더 잘 조사하고 알 시간과 기회를 가지게 한다.

4. 설교의 은사를 시험하기 위해 정해진 이 사흘 중 마지막 날에, 노회로부터 회중에게 서면으로 된 공적 통지가 보내져 백성 앞에서 공적으로 낭독되며, 그 후 교회 문에 게시되니, 이는 그날 그 회중의 회원 중 그들 스스로 임명한 상당수의 사람이 노회 앞에 나타나, 그 사람이 자기들의 사역자가 되는 것에 동의와 승인을 표하거나, 혹은 그에 대해 가진 이의를 그리스도인다운 신중함과 온유함으로 진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만일 지정된 날에 그에 대한 정당한 이의가 없고 백성이 동의한다면, 노회는 안수를 진행한다.

5. 안수를 위하여 지정된 날, 곧 안수받을 이가 섬길 교회에서 행해질 그날에, 회중은 엄숙한 금식을 지켜, 그리스도의 규례와 그 종의 수고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복 받도록 더욱 간절히 함께 기도하게 한다. 노회가 그 장소에 가거나, 적어도 노회로부터 서너 명의 말씀의 사역자가 그곳에 파송되어야 하니; 그 중 노회가 지정한 한 사람이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의 직무와 의무에 관하여, 그리고 백성이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교한다.

6. 설교 후, 설교한 사역자는 회중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안수받을 이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과, 성경에 따른 개혁 종교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이 부르심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의 성실한 의도와 목적과; 기도와 독서와 묵상과 설교와 성례의 사역과 권징과 자기 직무에 속한 모든 사역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근면함과; 오류와 분열에 맞서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

하는 데 있어서의 열심과 신실함과; 자신과 자기 가정이 양 떼에게 나무랄 데 없고 본이 되도록 하는 그의 돌봄과; 형제들의 훈계와 교회의 권징에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복종하려는 그의 의향과 겸비함과; 모든 어려움과 핍박에 맞서 자기 의무를 계속하려는 그의 결심에 관하여 물을 것이다.

7.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그가 선언하고 자기 뜻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수고를 약속하였을 때, 사역자는 마찬가지로 백성에게도, 주 안에서 다스림받는 자로서 그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의 직무의 모든 부분에서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도우려는 그들의 뜻을 요구할 것이다.

8. 이렇게 백성에 의하여 상호 약속이 이루어지면, 노회, 혹은 안수를 위하여 그들이 파송한 사역자들은 그에게 안수(안수의 손을 얹음)하여 그를 사역의 직무와 일을 위하여 엄숙히 구별할 것이니, 이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짧은 기도 혹은 축복을 동반하여야 한다: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으로의 그의 승천과, 거기서부터 자기 성령을 부어 주시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사 사도, 복음전도자, 선지자, 목사와 교사를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이는 그의 교회를 모으고 세우기 위함이며; 그리고 이 사람을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능하게 하시고 기울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 그에게 자기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그분께 간구하여,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이 거룩한 봉사를 위하여 이렇게 구별하는) 그에게 그 사역의 일을 모든 것에 있어 이루게 하시어, 그가 자기 자신과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기를 구하나이다."

*여기서 그의 머리 위에 안수한다.

9. 이 기도와 축복의 형식이 끝나면, 설교한 사역자가 그에게 그의 직무와 일의 위대함과, 그와 그 백성 모두에게 있어 태만의 위험과, 이생과 오는 생에서 그의 신실함에 따르는 복에 대하여 숙고하도록 간략히 권면하며; 또한 백성에게도, 앞서 행한 엄숙한 약속에 따라, 그를 주 안에서 자기들의 사역자로 대하도록 권면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와 그 양 떼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기도를 통하여, 시편을 노래한 후, 회중은 축복으로 흩어질 것이다.

10. 만일 어떤 사역자가 한 회중에 지정되었는데, 그가 앞서 잉글랜드 교회에 존재하였던 안수의 형식에 따라 장로로 안수받은 바 있다면 — 우리는 이를 그 본질에 있어 유효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받은 이들에 의하여 거부될 수 없다고 여기니 — 심사에 있어 신중한 절차를 거친 후, 새로운 안수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라.

11. 그리고 이미 스코틀랜드나 다른 어떤 개혁 교회에서 사역자로 안수받은 사람이 잉글랜드의 다른 회중에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회로부터 그 회중이 속한 이곳의 노회에게 그의 안수와, 그들과 함께 사는 동안의 그의 삶과 언행, 그리고 그가 옮기게 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증언을 가져와야 하며; 그의 적합성과 충분함에 대한 시험에 복종하여야 하니, 심사와 승인에 관하여는 바로 앞의 규칙에 정해진 대로 그와 함께 다른 세부 사항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12. 여러 노회에서 안수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증언, 안수의 시기와 장소, 그들에게 안수한 장로들, 그리고 그들이 임명된 직임에 대한 기록이 신중하게 보관되게 하라.

13. 어떤 노회도, 혹은 그에 속한 어느 누구도, 안수받을 사람이나 그를 대신한 누구로부터도, 안수를 위해서나 그에 속한 어떤 다른 일을 위해서도, 어떠한 구실로도 돈이나 선물을 받지 않게 하라.

심사를 위한 규칙

심사를 위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심사받는 이는 형제답게, 온유한 마음으로, 각 사람의 진중함과 겸손함과 지위에 특별히 유의하며 대우받아야 한다.

(2) 그는 원어에 대한 능력에 관하여 심사받아야 하며, 그 시험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읽고 그 일부를 라틴어로 번역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가 이 점에서 부족하다면, 그의 다른 학식과, 논리학과 철학에 능력이 있는지를 더 엄격히 조사하여야 한다.

(3) 그가 읽었고 가장 잘 아는 신학 저술가가 누구인지; 그리고 신앙의 근본에 대한 그의 지식과, 그 안에 담긴 정통 교리를 모든 오류적이고 견고하지 못한 견해, 특히 현시대의 것들에 맞서 변호할 능력이 시험되어야 하며; 양심의 문제에 있어 그에게 제시된 성경 본문의 뜻과 의미에 대한 그의 숙련도와, 성경의 연대기 및 교회사에 대한 그의 능력도 시험되어야 한다.

(4) 만일 그가 이전에 판단할 수 있는 이들의 승인을 받아 공적으로 설교한 적이 없다면, 정해진 적절한 시간에 그에게 지정된 성경 본문에 대하여 노회 앞에서 강해하여야 한다.

(5) 또한 그는 적절한 시간 안에, 그에게 지정된 신학의 어떤 통상적 주제나 논쟁점에 관하여 라틴어로 강론을 작성하고, 그 요지를 표현하는 논제들을 노회에 제시하며, 그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6) 그는 노회나 그들이 지정한 몇몇 말씀의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성 앞에서 설교하여야 한다.

(7) 그의 은사의 정도가 그가 부르심받은 자리와 비교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8) 설교에서의 은사 시험 외에도, 그는 그 자리에서 이틀 동안, 그리고 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이상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9) 그리고 이미 사역자로 안수받은 이가 다른 직임으로 옮기려 할 때에는, 그의 안수와 그의 능력과 언행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와야 하며, 그 후 그의 그 자리에 대한 적합성은 그곳에서의 설교로,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새로운 심사로 시험될 것이다.

특별한 실행들

여기까지가 통상적인 규칙들과, 통상적 형태에 있어서의 안수의 과정이니; 이제 지금 실행되어야 할 특별한 형태에 관한 것이 이어진다.

1. 현재의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모든 권세와 사역을 갖춘 어떠한 노회도 구성할 수 없고, 군대와 해군의 봉사를 위하여, 그리고 사역자가 없는 많은 회중을 위하여 많은 사역자들이 안수되어야 하는데; (공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백성 스스로가 자기들을 위한 신실한 사역자가 될 만한 이를 찾아낼 수 없거나, 앞서 통상적 규칙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그토록 엄숙한 시험을 위하여 확실하게 자기들에게 보내지도록 할 수 없는 경우, 특히 그들 가까이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거나, 혹은 그 회중과 백성을 위하여 안수받기에 적합한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어떠한 노회도 없는 경우; 그럼에도 사역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도 사역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이들로서 적합하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이들을 구별하는 데 함께할 권세를 가진 이들에 의하여 안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앞서 언급한 어려움들이 어느 정도 제거될 때까지, 런던 시나 그 인근의 몇몇 경건한 사역자들이 공적 권위에 의하여 지정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앞서 언급한 통상적 규칙에 최대한 가깝게 머물면서 그 도시와 그 인근을 위한 사역자들을 안수할 수 있게 하되; 이 연합은 다른 어떤 의도나 목적도 없이 오직 안수의 일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2. 동일한 권위가 여러 주의 큰 도시들과 인근 교구들에서, 현재 조용하고 소란이 없는 곳에서, 그 인근 지역을 위하여 동일하게 시행하게 하라.

3. 군대나 해군의 봉사를 위하여 선출되거나 지정된 이들은, 앞서 말한 대로, 런던의 연합 사역자들에 의하여, 혹은 그 나라의 다른 몇몇 사역자들에 의하여 안수되게 하라.

4. 어떤 사람이 어느 회중의 사역을 위하여 합당하고 정당하게 추천되었으나, 그의 자질과 능력을 시험할 자유를 누릴 수 없고, 그 교회와 백성을 섬기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더 잘 공급받기 위하여 연합 사역자들의 도움을 원할 때에도 동일하게 행하게 하라.

© 2026 Westminster 1647 :: https://westminster1647.com/ko/correo